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3218호)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(이하 “문화전당”이라 한다)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(‘20.4.13.)까지로 하되,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이에 따라,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(안 제22조의2 신설)

-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문화전당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하고,
-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. ~ 1. .)

3) 행정규제 : 대상 아님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성과평가의 절차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(이하 “문화전당”이라 한다)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문화전당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쳐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<u>제22조의2(성과평가의 절차 등) ①</u>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</u> <u>1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(이하 “문화전당”이라</u> <u>한다)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</u> <u>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지</u> <u>체 없이 문화전당의 평가계획을</u> <u>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</u> <u>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쳐야 한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</u> <u>따른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</u> <u>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문화전당</u> <u>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</u> <u>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3 - 2347